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문제에 관한 소고

오문성* · 김완용**

〈요 약〉

본 논문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비금의 감소’ 제도를 활용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현행 조세제도 하에서 초래하는 문제를 법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액배당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형태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준비금이 감액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는 순간 그 성격은 ‘자본’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의 분배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회계상 재원 출처만을 이유로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반한다.

연구에서는 먼저 상법상 준비금 제도의 구조와 입법 취지를 검토하고,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의 기계적 해석이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감액배당 비과세의 문제점을 실질과세원칙, 조세 형평성, 법체계 정합성, 재무구조건전성 및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과세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의 논리적 불일치를 밝히고, 유상감자 과세 사례를 통해 감액배당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미국·일본·독일의 입법례를 비교한 결과, 이들 국가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법상 독자적 기준(Earnings & Profits, 안분과세, Einlagekonto)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임의선택적 전액 비과세’ 구조가 국제적 정합성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제언으로는, 단기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세법상 배당가능이익(E&P) 개념을 도입하여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엄격히 구분하는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편은 조세 정의 확립과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성, 배당가능이익

*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cpaos@daum.net, 주저자

**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조교수, wykim@hycu.ac.kr, 교신저자

I. 서 론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감액배당’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메리츠금융지주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조정호 회장에게 약 2,306억 원의 배당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해당 배당이 ‘자본의 환급’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동시에 증폭되었다.¹⁾ 이 사례를 기점으로 우리금융지주, 셀트리온, 대신증권,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다수의 상장사들이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안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거나 실행에 옮기면서 감액배당은 단기간 내에 국내 상장기업의 실질적 주주환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²⁾

감액배당이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기업이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그 전입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회계상으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예 : 주식발행초과금)인 자본잉여금을 기업 내부의 회계처리를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주주는 그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일반적인 배당이 기업의 경상이익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소득세율(15.4% 원천징수, 종합소득세율 최고 49.5%)이 적용되는 데 반해, 감액배당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자본의 환급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제상 차별은 외형적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된 ‘준비금의 감소’라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감액배당 제도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자본 및 이익준비금의 감액 허용’ 조항에서 기인한다. 당시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본 활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었으며,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상법 제461조의2). 이로써 과도하게 적립된 법정준비금이 기업 경영에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 사실이나, 결과적으로는 대주주 중심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주주에 대한 현금 분배’가 단지 회계상 재원의 출처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나에 따라 전혀 다른 과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형평성이라는 세법의 핵심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

-
- 1) 배준희 · 문지민, “[진격의 ‘원메리츠’] 조정호 ‘10조 클럽’ … 주식 자산 ‘툭3’ 2306억 배당 … 감액배당으로 세금 ‘0’”, 『매경 ECONOMY』, 2024.10.23.
 - 2) 매일경제, “K밸류업 새 트렌드 ‘감액배당’ 배당 소득세 ‘제로’ … 지속 여부 관건”, 2025.05.16 (<https://www.mk.co.kr/news/economy/11319025>).

을 쌓은 후 그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된 배당은 형식적으로는 자본환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 이익의 분배와 다를 바 없으며, 특히 고액 배당을 수령하는 대주주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과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감액배당을 둘러싼 과세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 리하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상법상 준비금 제도의 법적 구조와 2011년 개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고, 감액배당이 가능한 법리적 전제가 되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의 해석상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제Ⅲ장에서는 감액배당을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어떠한 방식으로 저촉되는지를 분석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비교를 통해 국제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감액배당 활용 실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이 감액배당을 실질적 경제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단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Ⅱ. 감액배당의 법적 기초와 해석론적 문제

1. 상법상 준비금 제도의 개념과 입법 취지

우리 상법은 회사가 일정한 잉여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금과 더불어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자본충실의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자산의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며(상법 제459조),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배당할 때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58조). 이들 준비금은 회사의 순자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되어 자본의 유지를 강제하는 수단이 된다(상법 제462조).

상법상 이러한 규정은 ‘자본충실의 원칙(capital maintenance principle)’을 기초로 하며, 이는 회사의 자산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권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되어 온 상법의 기초적 이념이다.

그러나 자본준비금이 지나치게 많이 적립되는 경우, 기업의 자본운용이 경직되어 경제활동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실무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상법 개정에서 제461조의2를 신설하여,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감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준비금을 감액하여 회계상 자본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기업의 자율적 자본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조항은 감액된 준비금의 구체적인 용도나 전입처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후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 및 배당재원 활용 등 다양한 경로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로 인해 상법의 본래 취지와 세법상 과세원칙 사이에 구조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감액배당 문제의 핵심이다.

2. 감액배당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법리적 쟁점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ext{배당가능이익} = \text{순자산액} - (\text{자본금} + \text{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액} \\ + \text{적립할 이익준비금} + \text{미실현이익})$$

이 규정의 수학적 구조를 근거로 감액배당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자본준비금이 감액되면 공제 항목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배당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상법상 회계규정이 단순한 산식이 아니라 자본보전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상법의 계산규정에 대해 수학적 산식처럼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해석상 맥락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액배당의 논리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은 배당가능이익 증가의 전제로 작동하나, 실질적으로는 자본을 줄여 그만큼 외부 유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본충실 원칙과 충돌한다.

자본준비금은 본질적으로 주주의 출자금 일부이며, 이는 일반 이익과 구분되는 ‘자본거래의 결과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통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배당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기자본을 감소시켜 주주에게 환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는 이러한 배당가능이익 증가 해석이 자칫 자의적 기업행동의 정당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준비금 감액을 통해 자의적으로 배당 가능 범위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고액 배당을 가능케 하는 구조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3. 상법과 세법의 해석 불일치 문제

감액배당과 관련하여 가장 큰 제도적 문제 중 하나는 상법과 세법의 해석상 불일치이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순자산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의 일부를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회사 자본의 잠식을 방지하고, 채권자 보호라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³⁾ 따라서 자본준비금은 본질적으로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배당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세법,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세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배경에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거래의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자본거래는 주주의 출자 또는 환급에 해당하여 소득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문제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이 감액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는 순간, 해당 금액의 법적 성격이 ‘자본’에서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세법은 여전히 이를 자본환급금으로 보아 비과세하는데, 이 지점에서 상법과 세법의 논리가 충돌한다.

배당가능여부는 상법에서 규정해야 하고 배당이 전제되어야 이후 세법에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법과 세법은 이러한 논리가 이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상법 제461조의2에서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액을 통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자본준비금의 감액이라는 자본준비금을 줄인다는 의미로 자본준비금을 줄여 결손금 보전이나 자본금 전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규정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동법 제462조에서는 이익배당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2호에서 대차대조표(현행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다고 하여 법정적립금인 자본준비금은 이익배당을 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공제하는 금액이 감소하니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증가되어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상법의 계산규정이나 회계상 산식을 마치 수학식으로만 보고 있는 오류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법 제461조의2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라고

3) 양동준, 「상법상 준비금 제도에 관한 연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38권 제2호, 2024, 12-13쪽.

4) 회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1) 자산=부채+자본이라는 산식과 (2) 자산-부채=자본이라는 산식은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식으로 볼 수 있지만 회계에서는 ‘(1)’식은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질적으로 보고 ‘(2)’식은 자산과 부채의 성격을 동질적으로 보는 산식으로 ‘(1)’과 ‘(2)’의 산식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여 배당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다. 결국 상법에서 확실하게 확정하지 않은 배당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비과세 대상인 배당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불일치는 자기주식처분이익 과세 제도와의 비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자본거래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법인세법은 이를 ‘익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이는 자본거래라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주주 이익으로 귀속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일한 논리를 감액배당에도 적용한다면, 감액배당 역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유상감자의 경우도 유사한 법리 구조를 가진다.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수령한 금액 중 자본금 상당액은 자본환급으로 비과세되지만, 자본금 상당액의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이는 자본환급과 이익분배를 세법상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하는 사례로, 감액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논리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감액배당에 대해 이러한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김성은(2012)은 개정 상법의 회계규정이 자본준비금의 활용을 신축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세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해석상 충돌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양동준(2024) 역시 자본준비금 감액이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세법이 이를 자본환급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수진·서동연(2022)은 준비금 감액배당의 세무상 처리가 자기주식 취득·유상감자 등 유사 거래와 달리 과세 공백을 초래한다고 분석하였다. 심해린·최기호(2025)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중 자본준비금 감액이 확인되는 기업의 비중은 약 4% 내외이며, 평균 감액 규모는 2012년 258억 원에서 2021년 1,0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감액의 목적임을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에는 감액의 1/3만이 배당 목적으로 추정되었으나, 2021년에는 그 비중이 56%까지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결손 보전을 넘어 주주, 특히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감액배당을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4. 감액배당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론

국내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된 감액배당의 법적 성격과 과세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과세여부의 타당성에 대해서 주요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된 학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본환급설(비과세설)은 감액배당이 자본준비금의 감액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적법한 자본거래이며,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본준비금은 주주의 출자금 일부로서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며, 이익의 분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견해는 상법 제461조의2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것을 허용한 이상, 그 재원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후 배당되더라도 원천은 자본이므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세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의 현행 규정(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비과세)에 부합하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둘째, 이익분배설(과세설)은 감액배당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일반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자본준비금이 감액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는 순간, 해당 금액은 더 이상 자본이 아니라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전환되며, 이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익분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상 재원의 출처가 자본인지 이익인지와 무관하게, 주주가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는 이상 과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제도는 대주주에게 과도한 절세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형평성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특히,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임에도 과세 대상으로 보는데, 감액배당만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체계상 불일치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다.

이 두 학설의 대립은 결국 형식(자본환급)과 실질(이익분배) 중 어느 측면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실무적으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본환급설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익분배설의 논거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 과세방식과 국제적 조세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가 많다.

감액배당을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환급과 이익분배의 경계를 판단한 유상감자나 자본전입 관련 판례에서, 대법원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에 따르면,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경우 이는 회사 재산을 내부에 유보시켜 주주에게 현금배당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다만, 판결은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취지가 완전한 비과세가 아니라, 기업의 자본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과세 이연’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조세쟁송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행위, 대금 결제방법, 거래의 경과 등 전체적인 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⁵⁾

5)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 27091 판결 등, 박수진·서동연, (2022), p.241.

국세청은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주주가 수령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도로 하는 부분은 자본환급으로 비과세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사례에서, 국세청은 감자대가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서면-2024-법규법인-0701, 2025.07.11.).

이러한 판례와 해석은 감액배당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상감자와 감액배당은 모두 자본금 또는 자본준비금의 감소를 수반하고 주주에게 현금이 환급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유상감자는 과세 근거가 존재하고, 감액배당은 전액 비과세되는 현행 구조는 법체계의 일관성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III. 감액배당 비과세의 문제점

1. 실질과세 원칙 위배

감액배당에 대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세법의 일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구조는 자본거래를 이익거래와 구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원본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현한다.

그러나 상법상 자본준비금이 감액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는 순간, 그 법적 성격은 ‘자본’에서 ‘이익’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후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익의 분배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회계상 재원의 출처가 자본준비금이라는 이유로 전액 비과세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거래가 형식상의 차이만으로 전혀 다른 과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조세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하며, 과세형평에도 반한다.

유사한 거래인 유상감자의 경우, 국세청과 법원은 일관되게 주주가 수령한 금액 중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도로 하는 부분만 자본환급으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해 왔다.⁶⁾ 이는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분배를 실질에 따라 구분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서면-2024-법규법인-0701, 2025.07.11. 등

감액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이다. 이처럼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분배를 실질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과세법규 해석의 기본 원칙이며, 감액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즉, 감액배당이 자본준비금의 감액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이익분배라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조세 형평성 훼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주주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인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차별적 과세체계는 동일 실질에 대한 상이한 과세 문제를 야기한다.

대표적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만,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익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반면,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사실상 배당재원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비과세되며, 이로 인해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거래가 과세 여부에서 현저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 중립성(tax neutrality)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감액배당 비과세의 논리적 모순은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과세 제도와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계상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된다. 만약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자기주식처분이익 역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과세 대상인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이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이나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조세 부담도 같아야 한다는 조세공평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감액배당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이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이나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실질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과세하면서 감액배당은 비과세하는 것은, 자본거래 이익에 대한 일관된 과세 원칙이 부재함을 보여 준다.

3. 재무구조 건전성 훼손 및 채권자 보호 문제

자본준비금을 활용하는 감액배당에 대하여 현행처럼 비과세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배당의 형태나 배당률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금절약의 측면에서 감액배당을 일반배당보다 우선하여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훼손시키는 측면이 있다. 감액배당 비과세는 대주주에게

절대적으로 많은 배당세액을 절감시킴으로써 대주주가 배당형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자본준비금을 우선적으로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의 훼손을 촉진시키는 점도 감액 배당 비과세의 큰 약점으로 볼 수 있다.

자본준비금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capital maintenance principle)을 구현하는 핵심 장치이다. 이는 회사가 자본금을 함부로 감소시키지 못 하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손실 발생 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무적 완충재 역할을 한다. 상법 제461조의2는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한해 감액을 허용하지만, 감액 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도적 허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 비과세 제도는 대주주에게 강력한 세금 절감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 재무 안정성보다 단기적 배당 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단지 비과세 혜택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는 경우, 이는 미래의 재무적 안전판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행위가 된다.

채무구조가 악화되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지표(예 :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가 악화되고, 이는 채권자의 신용평가 및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경기 침체기나 대규모 손실 발생 시 결손 보전 재원이 고갈되어 법정관리·회생절차 진입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금융업·제조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다.

IV. 해외사례 비교

감액배당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그리고 과세 형평성 확보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계된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의 입법례는 세법상 ‘배당’의 정의를 회계 개념과 명확히 구분하고, 과세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설정함으로써 조세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회계상 재원 출처(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에 따라 전액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과 대조적이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미국 - E&P(Earnings & Profits) 제도

미국 연방세법은 배당 여부 판단 시 회계상의 잉여금 구분이 아니라 세법상 Earnings & Profits(E&P) 개념을 적용한다. Internal Revenue Code(IRC) §316(a)에 따르면, “배당(Dividend)이란 법인이 주주에게 재산을 분배(distribution)하는 경우로서, 그 재원이 회계상 자본잉여금이든 이익잉여금이든 상관없이 누적된 E&P에서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다.”라고 규정한다(순차법).

즉, E&P 범위 내의 분배라면 전액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되지만, E&P를 초과하는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원가 한도까지 자본환급(Return of capital)으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 구조는 기업이 재원의 형식을 선택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즉, 회계상 자본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E&P 범위 내에 있거나 주식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면 배당으로 과세한다.

박수진·서동연(2022)은 미국 E&P 제도가 “회계상 잉여금 구분에 따른 과세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인의 분배정책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제도는 배당가능이익(E&P)을 순차적으로 소진하는 방식을 통해, 법인이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잉여금 형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재원 선택권에 따른 전액 비과세’ 허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즉,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거래에는 동일 과세가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참조할 만한 것이다.

2. 일본 - 안분과세 방식

일본은 자본잉여금(資本剰余金)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본금(資本金)과 이익잉여금(利益剰余金)의 비율에 따라 분배액을 안분하고,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당으로 과세한다. 법인세법(法人税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이익을 배당하거나 분배하는 경우,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구성비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안분법). 즉, 일본 제도는 혼합 재원 배당 시 자본환급·이익분배를 비율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 세법상 주주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회사로부터 자산을 교부받는 경우, 이는 단순한 자본의 환급이 아닌 복합적인 거래로 본다. 즉, 교부받은 재산 가액을 투자 원금 회수분(양도소득)과 이를 초과하는 이익 실현분(간주배당)으로 안분하여 각각 다르게 과세하는 것이다.⁷⁾ 예를 들어, 자본잉여금에서 1억 엔을 배당하더라도, 자본금 구성비가 40%, 이익잉여금 구성비가 60%라면, 6천만 엔은 배당으로 과세하고, 4천만 엔은 비과세 처리한다.

양동준(2024)은 일본 제도를 “형식적 자본거래 명목의 전액 비과세를 원천 차단하는 합리적 방안”으로 평가하며, 우리나라가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수진·서동연(2022)도 일본 안분과세 방식이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경계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자의적 회계처리에

7) 미국 세법이 배당 외 금액을 전액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과 달리, 이 방식은 교부액 전체가 아닌, 그중 투자 원금이 반환된 부분에 한해서만 비례적으로 취득가액을 조정한다(오종문 2020).

다른 과세 불평등을 최소화한다”라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제도는 자본준비금에서 전입된 이익잉여금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므로, 일본식 안분과세와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독일 - 납입자본계정(Einlagekonto) 제도

독일 상법(Aktiengesetz, AktG)은 자본준비금(Kapitalrücklage)의 감액을 엄격히 제한하며, 감액 시 채권자 보호 절차(Creditor protection procedure)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다(AktG §150 ~ §152). 이는 자본준비금이 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임의 감액이 자본충실 원칙(capital maintenance principle)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반영한 것이다.

독일의 자본준비금(Kapitalrücklage) 감액에 따른 분배는 Körperschaftsteuergesetz(법인세법, KStG)과 Einkommensteuergesetz(소득세법, EStG)에 의해 이원적으로 규율된다.

먼저, KStG §27(세법상 납입자본계정, Steuerliches Einlagekonto)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유입된 납입자본(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등)을 세법상 별도의 계정(Einlagekonto ; 납입자본계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이 계정에서 주주에게 환급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자본환급으로 보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급액이 납입자본계정(Einlagekonto)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대상 배당으로 간주된다(KStG §27 Abs. 1-3).

한편, EStG §20 Abs. 1 Nr. 1은 주주가 수령한 분배금 중 납입자본계정(Einlagekonto)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전형적인 이익분배로 보아 배당소득세(Kapitalertragsteuer)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분 중 자본환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과세되는 구조를 가진다.

실무적으로 법인은 자본준비금 감액 시 KStG §27에 따른 납입자본계정(Einlagekonto) 감소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세무당국은 해당 금액이 자본환급 한도(Einlagekonto 잔액) 내에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EStG §20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와 같은 제도는 자본준비금 감액이 무조건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세법상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법인 재원의 회계상 출처가 자본준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하는 우리나라 현행 방식과 달리, 독일은 ‘납입자본계정(Einlagekonto)’이라는 세법상 개념을 통해 자본환급 가능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조세회피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양동준(2024)은 독일의 규율 구조를 “상법과 세법이 일관된 자본충실 유지와 경제적 실질 과세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이라고 평가하였다. 독일의 경우,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 허용 자체를 제한하므로, 우리나라처럼 제도 남용 가능성이 낮다.

4. 시사점

박수진·서동연(2022), 양동준(2024) 등은 우리나라의 ‘전액 비과세’ 구조가 국제적 과세원칙과 정합성이 부족하며, 특히 미국·일본식 과세방식이 조세 형평성과 실질과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제도는 대주주 중심의 절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제도의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종합하면, 자본준비금 감액분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국가는 드물며, 대부분 세법상 별도의 판단기준을 두어 과세·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표 1〉 감액배당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구분	배당 여부 판단 기준	과세 방식	특징
한국	회계상 재원 출처 (자본준비금 여부)	자본준비금 감액분 전액 비과세	• 회계상 자본준비금 감액은 ‘자본 환급’으로 간주 • 재원 출처만으로 전액 비과세, 과세·비과세 구분 기준이 형식적
미국	세법상 Earnings & Profits(E&P) 개념	E&P 범위 내 전액 과세, 초과분만 자본환급(비과세) → 그 이후 초과분은 양도 소득 과세	• 배당 여부를 세법상 개념으로 일원화, 회계상 재원 구분 무의미 • 동일 실질에 동일 과세, 재원 선택 통한 조세회피 차단
일본	자본금·이익잉여금 비율에 따른 안분	이익잉여금 해당 부분만 과세, 자본금 부분은 비과세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혼합 시 비율 계산으로 과세 범위 명확화 • 혼합 재원 배당에도 과세 범위 정확히 산정
독일	세법상 납입자본계정 (Einlagekonto) 잔액	납입자본계정(Einlagekonto) 한도 내 비과세, 초과분은 배당 과세	• 자본환급 가능 범위를 세법상 계정으로 엄격 관리 • 무조건 비과세 방지, 실질과세 원칙 반영

미국은 E&P 개념을 통해 회계상의 자본거래 여부가 아니라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재원 출처를 임의로 선택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일본은 자본잉여금 배당 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혼합재원 배당에서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독일은 세법상 ‘납입자본계정(Einlagekonto)’ 제도를 두어 자본환급 가능 범위를 엄격히 관리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한다.

반면 한국은 회계상 자본준비금이라는 형식적 재원 구분만으로 전액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유상감자·자기주식처분이익 등과 비교할 때 조세 형평성과 법체계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대주주 중심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세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① 세법상 배당 개념을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방식(E&P 제도), ② 혼합 재원 분배 시 안분과세 방식, ③ 자본준비금 감액 제한 등 상법·세법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감액배당에 대한 현행 비과세 제도는 상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통한 배당이지만, 그 실질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일반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및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감액배당은 상법의 대원칙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전통적 해석을 왜곡한다. 자본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손 보전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적립된 법정적립금인데, 이를 배당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법이 예정한 자본유지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둘째, 현행과 같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허용하면, 대주주가 일반 배당보다 감액배당을 우선 실행하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절세 동기가 형성된다. 이는 기업이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보다 단기적인 세후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셋째, 미국의 E&P 제도나 일본의 안분과세 방식과 달리, 우리 제도는 배당 재원의 회계상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임의선택 구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조세회피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과세원칙과도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

감액배당 제도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운용 사례를 보면, 결손 보전 목적보다는 대규모 현금 배당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컨대 2023년 메리츠금융지주는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최대주주에게 약 2,306억 원을 배당했으며,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이후 우리금융지주, 대신증권, 셀트리온 등 다수의 상장사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흐름은 제도의 본래 입법 취지와 괴리될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정 집단, 특히 대주주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세제 혜택이 지속된다면, 일반 납세자들은 세 부담의 형평성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세법 준수를 저하와 조세 회피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기적·중장기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제18조 제8호)과 같이, 소득세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주주가 받는 감액배당에 대해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여,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개인주주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과세 공백이 존재한다. 배성호(2024)의 제안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라는 문구를 추가해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간의 과세 형평을 맞추고, 명백한 과세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이 개정은 법문 구조상 간단하면서도 과세 공백 해소 효과가 즉각적이며, 제도적 저하도 비교적 적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 개선 방안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 배당가능이익(E&P)’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박수진·서동연(2022) 등 다수의 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법인의 유보소득을 세법 고유의 기준으로 관리하고, 주주에 대한 분배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제도는 감액배당뿐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 유상감자 등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통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자본환급과 이익분배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세원칙과 정합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세법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조세는 국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계약이며, 모든 납세자는 형평성 있는 세 부담을 전제로 이 계약에 동의한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절세가 방치된다면, 성실한 납세자의 신뢰는 무너지고, 공동체의 재정 기반은 약화된다. 감액배당 과세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는 조세 질서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성은. 2012. “개정상법의 회계규정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34권.
- 박수진 · 서동연. 2022. “준비금 감액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과세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11권 제3호.
- 배성호. 2024. “주주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42권 제1호.
- 배준희 · 문지민. 2024. “진격의 ‘원메리츠’ 조정호 ‘10조 클럽’ … 주식 자산 ‘톱3’ 2306억 배당 … 감액배당으로 세금 ‘0’”. ECONOMY. 2024.10.23.
- 심혜린 · 최기호. 2025. “주가조정에 반영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세금효과”. 회계학연구 제50권 제3호.
- 양동준. 2024. “상법상 준비금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38권 제2호.
- 오종문. 2020.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2권 제4호.
- 매일경제. 2025. “K밸류업 새 트렌드 ‘감액배당’ 배당 소득세 ‘제로’ … 지속 여부 관건”, 2025.05.16 (<https://www.mk.co.kr/news/economy/11319025>).

A Commentary on the Taxation Issues of Capital Reserve Reduction Dividends

Moon Sung Oh* · Wan Yong Kim**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legal and comparative tax implications of capital reserve reduction dividends introduced by the 2011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proposes targeted policy reforms. Pursuant to Article 461-2 of the Act, a company may reduce its capital reserve and distribute the resulting funds to shareholders. Under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uch distributions are wholly classified as a “return of capital” and thus entirely exempt from taxation. However, once the capital reserve is reclassified into retained earnings, its character shifts from “capital” to “profit,” making the distribution substantively equivalent to operating profit distributions. Granting a full exemption based solely on the accounting source undermines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and tax equity. The analysis explores the structural framework and legislative intent of the reserve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noting that a purely formulaic interpretation of distributable profit calculations may contravene the capital maintenance principle. It then evaluates the exemp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substance-over-form doctrine, horizontal equity, systemic consistency, corporate soundness, and creditor protec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inconsistencies with the Corporate Tax Act’s treatment of treasury stock gains. A comparative review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reveals a clear separation between capital and profit distributions, ensuring neutrality and preventing arbitrag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Korea’s current “optional full exemption” regime diverges from prevailing international norms. The paper recommends, in the short term, amending the Income Tax Act to tax distributions exceeding shareholders’ acquisition cost, and in the long term, adopting a tax-specific distributable profits concept (E&P) to draw a definitive line between capital and profit transactions. Such reforms would safeguard tax fairness while reinforcing the stability and integrity of the capital market.

〈Key words〉 Capital Reserve Reduction Dividend, Capital Reserv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Tax Equity, Earnings and Profits (E&P)

* Professor, Department of Tax & Accounting, Hanyang Women’s University, cpaos@daum.net,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inance, Accounting and Tax, Hanyang Cyber University, wykim@hycu.ac.kr, Corresponding Author